

稅法中

畜產關係條文 拔抄

農水產部

조세 감면 규제법 (1978. 12. 5 법률 제 3102호)

제 4 조 (법인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51.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제 4 조의 6.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

①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세액 중 종전의 소득세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② 제 1 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업 투자계획서(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2 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축산업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행한 때에는 이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제 2 항의 축산업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

를 이행하여 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1년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 2 항의 축산업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 4 항의 기간내에 투자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액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제 4 항의 기한까지 그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천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⑥ 제 1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축산업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의 8.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 2 항에 개기하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제 2 항 제 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하여는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 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생 략

3. 생 략

(② 제 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 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 1항 제 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 9조(재산세의 면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삭 재

(④ 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⑤~⑪ 생 략

제 10조(취득세의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생 략

제 18조(적용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년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68. 12. 17 법 2053)

① (시행일) 이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에) 제 9조 제 4항 및 제 10조 제 2항 제 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73.12.20 법 2637)

①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⑥ 생략

⑦ (적용예) 제 4 조의 6 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4.12.19 법 2678)

① (시행일) 이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⑩ 생략

⑪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75.12.22 법 279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5조 제 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제 5 조 생략

제 6 조(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 9 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 7 조(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 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6.12.22 법 293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제 3 조 생략

제 4 조(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후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제 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부 칙(78.12.5 법 310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 2 조~제 4 조 생략

제 5 조(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 9 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 10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78.12.30령 제 9232호)

제 3 조(축산업투자의 범위) 법 제 4 조의 6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별표 1 가의 사업종별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 규모에 상당하는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축산물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내국법인(이하 “축산법인”이라 한다.)에 출자(금전출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축산법인이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목장사업을 확장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별표 1 가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축산업투자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① 법 제 4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 1 가의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 1 호 서식의 축산업투자전체계획서(이하 “전체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계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년내의 투자계획 기간별로 별표 1 나의 분할 계획상의 사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 1호 서식의 축산업투자분할계획서 (이하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분할계획기간마다 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가 축산업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법인 전체 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 (이하 "축산업투자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 4조의 6 제 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자가 당해 축산업투자계획서에 계상된 투자 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4조의 6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 기한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법 제 4조의 6 제 4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자는 동조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 기한내에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 4 항과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축산업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신청)

① 법 제 4조의 6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소득세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소득세 면제 신청서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 투자계획서의 사본

2. 내국인이 축산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 1호의 소득세 면제 신청서 및 축산업 투자계획서 사본과 축산업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축산업출자 증명서의 사본

②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자는 이행후 60일내에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별지 제 6호 서식의 축산이행업무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을 받은 자가 축산업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증명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 4조의 6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내국인이 축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begin{array}{c}
 \text{소득세법} \\
 \text{제 16조의} \\
 \text{규정에 의한} \\
 \text{종합 소득결정} \\
 \text{세액} \times (50/100)
 \end{array}
 +
 \begin{array}{c}
 \text{축산업투자계획서에} \\
 \text{계상된 자기자금으로} \\
 \text{로 투자할 금액}
 \end{array}
 = \text{면제할} \\
 \text{소득세법 제 4 조의} \\
 \text{규정에 의한 종합} \\
 \text{소득(소득세법} \\
 \text{제 16조의 규정에} \\
 \text{의한 종합소득결정} \\
 \text{세액} \times (50/100)
 \end{array}$$

2. 내국인이 축산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begin{array}{c}
 \text{(소득세법 제 16조의)} \\
 \text{규정에 의한 종합} \\
 \text{소득결정세액} \times \\
 \text{(50/100)}
 \end{array}
 +
 \begin{array}{c}
 \text{출자자의 납입금액} \\
 \text{(소득세법 제 4 조의 규} \\
 \text{정에 의한 종합소득} \\
 \text{(소득세법 제 16조의} \\
 \text{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
 \text{결정세액} \times (50/100))
 \end{array}
 = \text{면제할} \\
 \text{소득세액}$$

② 축산업법인은 제 1항 제 2호의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투자계획기간에 맞추어 당해 축산업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 천도에 한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 7 조(면제한 소득세의 추징) ① 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투자이행 증명서에 계산된 투자금액이 제 6 조 제 1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 제 4 조의 6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② 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 법 제 4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그 계획서에 기재된 전체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면제받은 모든 소득세액에 의하여 법 제 4 조의 6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제 8 조(중요산업등의 사업개시일) ① 법 제 4 조의 8 제 1 항 제 1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말한다.

5. 축산업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 축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 9 조(투자의 범위) ① 법 제 4 조의 8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 4 조의 8 제 2 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기계(공해방지시설과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실지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로 본다.

4. 축산업에 있어서는 조지 가축, 축사, 창고 기타설비

② 생 략

제 18조의 2(축산업의 범위) 법 제 4 조의 8 제 2 항 제 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토끼, 친칠라, 사슴, 망크, 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 증식(축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자가 아닌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채란, 채모, 착유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1] 축산업시설 및 규모

(개정 74. 12. 31. 대통령령 7460)

가.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 분 사업종별	가 축 (두수)	축 사 (m ²)	초지또는사료포	
			초지(ha)	사료포(ha)
한우목장사업	1,000	4,950	500	250
육우목장사업	1,000	4,950	500	250
유우목장사업	1,000	8,250	500	250
산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면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나.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 분 사업종별	가 축 (두수)	축 사 (m ²)	초지또는사료포	
			초지(ha)	사료포(ha)
한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육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유우목장사업	200	1,650	100	50
산양목장사업	2,000	1,650	100	50
면양목장사업	2,000	1,650	100	50

[별지 제 1 호 서식]

축산업투자(전체) 계획서
(분할)

[별지 제 2 호 서식]

축산업투자(전체) 계획변경서
(분할)

[별지 제 3 호 서식]

축산업투자(전체) 계획기한연장승인서
(분할)

[별지 제 4 호 서식]

소득세 면제 신청서

[별지 제 6 호 서식]

축산업투자(전체)이행증명서

법인세법(1978. 12. 5 법률 제3099호)

제 4 장의 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59조의 2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
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59조의 3 (비과세 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
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 칙(78. 12. 5 법률 309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제 9 조 생략

법인세법시행령(78. 12. 20령 제9230호)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 5 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
하는 금액

②~③ 생략

제124조의 6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① 법 제59조의 3 제 8 호의 규정은 별
표에 계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에 계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 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에 계기하는 토지면
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
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
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하여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 법 제59조의 3 제 8 호의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에 계기하는 범
위안에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59조의 3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 1 항 각호
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 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 법 제59조의 3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 1 항 각호
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목장목축증명세서를 첨부하
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78. 12. 30대통령령 제9230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099호 법인세
법증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에)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한다.

제 3 조~제 11 조 생략

[별표] (신설 72. 12. 17 대통령령 제7464호)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사업별	사육, 성축두수	면세범위
한우, 육용우 사육사업	20두	두당 1, 150m ²
유우 사육사업	20	두당 2, 300m ²
양, 사슴 사육사업	200	두당 230m ²
돼지 사육사업	100	두당 13m ²
토끼 (친칠라 및 링크를 포함 한다) 사육사업	500	수당 3m ²
가금사육사업 (종계장에 설치 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1,000	수당 3m ²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72. 2. 17 대통령령 제6073호〉

신 청 인		처리 기간	
축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① 본점소재지		
	② 법인명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⑥ 사업년도			
⑦ 결산 확정일			
⑧ 사업명 및 종류			
⑨ 사업개시연월일			
⑩ 감면소득금액	원		
⑪ 감면법인세액	원		
<p>법인세법 제2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19 . .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분손익계산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수입인지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79.5.21재무부령 제1398호)

제59조의 6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 법 제59조의 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 6에 규정하는 신목장 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목장 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 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 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은 당해 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 영 제124조의 6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59조의 7 (목축명세서) ① 영 제124조의 6 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 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24조의 6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

목장을 양도한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 목장 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79.5.21 재무부령 제139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75. 3. 3 재무부령제1079호)

[별지 제16호서식]

신목장 목축 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 목 장 용 자 산	⑧ 취득일자	⑨ 취득자산 소재지	⑩ 종류	⑪ 면적 (m ²)	⑫ 취득가액	⑬ 참고		
	101							
	102							
	103							
	104							
	105							
106 계								
신자자 목산 장양 용도	⑭ 성명 또는 법인명		⑯ 납세번호					
	⑮ 주소							
	⑰ 가축 종류	⑱ 가축 두수	⑲ 단위 당면적 (m ²)	⑳ 확보하여야 한 토지면적 (⑰ × ⑲)	㉑ 가축 종류	㉒ 가축 두수	㉓ 단위당 면적 (m ²)	㉔ 확보하 야 할 토지면 적 (㉒ × ㉓)
	107 한우 육용우	1,150			111토끼 친 칠라 링크		3	
	108 우 우	2,300			112 가금		3	
	109 양, 사슴	230			113			
110 돼 지	13			114 계				

법인세법시행령 제 124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9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①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75. 3. 3 재무부령 제1079호)
구목장 목록 명세서

구 분	사 육 가 축 의 두 수				
	① 한우육용우	② 유 우	③ 양, 사슴	④ 화 지	⑤ 토끼, 친칠라, 링크
⑩ 년					
⑪ 년					
⑫ 년					
⑬ 년					
⑭ 년					
구 분	⑥ 가 람	⑦ 계	⑧ 목장용도지 의 평 수	⑨ 목상용건물 의 평 수	⑩ 과 세 상 황
⑩ 년					
⑪ 년					
⑫ 년					
⑬ 년					
⑭ 년					

- * ① 연도는 양도일 이전 5개 과세년도
- ② 사육가주의 두수는 매월 말 기항에 의한 평균두수를 기재
- ③ 과세상황은 과세, 감면, 비과세, 흑역, 폐업등을 기재

소득세법 (79. 8. 14 법률 제3168호)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사업소득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6조(세액의 감면) ① 생 략

②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①~②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 생 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총수입금 不算人) ①~③ 생 략

④ 축산업, 임업, 수산업, 광업, 채석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채석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78. 12. 30 대통령령 9229호)

제6조의 2(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법 제5조 제3호 (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

만, 부업적인 소득(별표 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1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제19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및 전물)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 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 1에 게기하는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 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축산업, 임업, 수렵업과 수산업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

- (가) 낙농업
- (나) 양계업
- (다) 조류사육업

(라) 소, 말, 돼지, 양, 염소, 토끼 및 친칠라, 링크, 사슴 기타 특수동물 사업

(마) 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업.

2~4 생 약

제60조(부동산 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자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 약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취득가액과 그부대비용을 포함한다)

6~19 생 약

②~⑦ 생 약

제100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4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②~③ 생 약

부 칙(78.12.30 대통령령 92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098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13조 생 약

(별표 1)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사업별	사육, 성축두수	면세범위
한우, 육용우 사육사업	20두	두당 1,150m ²
유우사육사업	20 "	2,300m ²
양, 사슴사육사업	200 "	230m ²
돼지사육사업	100 "	13m ²
토끼 (친칠라 및 링크를 포함한다) 사육사업	500두	3m ²
가금사육사업 (종제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1,000두	3m ²

[별표 3)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 소	1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20마리	
돼 지	100마리	
산 양	100마리	
면 양	100마리	
토 끼	1,000마리	
닭	1,000마리	
오 리	1,000마리	

소득세법시행규칙 (79. 5. 21 재무부령1397호)

제 2 조의 2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영 제 6 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 9 조(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부장토지 등에 대한 과세) ① 법 제 6 조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혀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목장 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 6 조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주소지, 거소지등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9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은 당해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 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⑤ 영 제19조제 4 항에 규정하는 신목장 목축

명세서는 별지 제 3 호 서식 영 제152조제 3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구목장 목축명세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

신목장 목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과 동일

[별지 제 4 호서식]

구목장 목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과 동일

지방세법 (79. 4. 14 법률 제3160호)

제 7 조(공익동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퇴비사 가축가금과 그생산물의 매매의 업에 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방한 퇴비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면소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

6~9 생 략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누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2)~(3) 생 략

(4) 의 2. 전. 답. 과수원. 임야

그 가액의 1,000분의 1

(5) 제 1 목 내지 제 4 목의 3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34조(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234조의 2(세율) ①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 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다.

목장용초지에 대한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준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 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목장용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초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성된 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3. 초지기준면적(유우는 1두당 0.5헥타 한우 및 육우는 1두당 0.3헥타)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목장용초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준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 7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면)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초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초지로 조성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2. 초지기준면적(유우는 1두당 0.5헥타, 한우 및 육우는 1두당 0.3헥타)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적용세율) ①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성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조성후 최초로 개시되고 납기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기간이 경과된 초지와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 1항제 1호제 5 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 동호 재

4의 2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
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
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지적법 (75. 12. 31 법률 제2801호)

제 5 조(지목) 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에 따라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 하천, 제
방, 溝渠, 潘池,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 유
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
분하여 정한다.

② 제 1 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지목) 대한 경파조치) ① 생 략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목중 이 법에 의하
여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운
동장, 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
록하고 관할동록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제41조

제 1 항 후반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적법시행령 (79. 3. 10 대통령령 제9365호)

제 5 조(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
하여 정한다.

1~3 생 략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
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
된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
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24. 생 략

月刊養鷄 | 합본 판매중

79. 1~79. 6
79. 7~79. 12

문의 ☎ (22) 3571~2